

의안번호	제672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23일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2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발 의 자 : 이의영,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 (안 제4조)
- 충청북도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안 제8조)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안 제9조)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8.
- 협 의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농촌자원과
- 비용 추 계 :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협의체” (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법 제4조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9. 생략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 ⑥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및 제9조(예방 교육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5~2029년(5년)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 예방 교육 추진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6개소) : 300백만원/년 *개소당 50백만원
 -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11개소) : 330백만원/년 *개소당 30백만원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9개소) : 54백만원/년 *개소당 6백만원

- 산출결과 : 2025~2029년까지 5년간 도비 840백만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 국비 50, 시군비 50%
-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 도비 50, 시군비 50%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 국비 50, 시군비 50% *기술원 : 국비 50, 도비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684,000	684,000	684,000	684,000	684,000	3,420,00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재원 조달		684,000	684,000	684,000	684,000	684,000	3,420,000
의존 재원	소 계	177,000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보조금 (국비 25.9%)	177,000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자체 수입	소 계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지방세 (도비 24.6%)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시·군비(49.5%)		339,000	339,000	339,000	339,000	339,000	1,695,000

6. 작성자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농촌자원과장 피정의